

수가 규정

[1983. 7. 1 규정 제 7 호]

개정	1995. 4. 21	규정 제 125호	1997. 3. 25	규정 제 141호
	2002. 6. 30	규정 제 210호	2004. 6. 17	규정 제 231호
	2005. 7. 28	규정 제 245호	2005. 12. 28	규정 제 246호
	2007. 3. 28	규정 제 255호	2008. 3. 26	규정 제 268호
	2008. 6. 26	규정 제 271호	2010. 6. 16	규정 제 298호
	2010. 9. 7	규정 제 301호	2011. 2. 1	규정 제 318호
	2012. 9. 28	규정 제 341호	2012. 12. 27	규정 제 345호
	2013. 4. 16	규정 제 351호	2013. 7. 5	규정 제 354호
전부개정	2018. 2. 12	규정 제 455호	2018. 12. 31	규정 제 4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이하 “제요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진료행위에 따른 수가, 시설의 사용료 등 의료원에서 징수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요금의 결정) ① 급여수가는 관련법령(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등)에 의한다.

②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요금은 수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018.12.31. 규정489>

제4조(제요금의 징수) ① 제요금의 징수는 조정일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혹은 퇴원 시에 징수 할 수 있다.

② 입원실 등급 변경일의 입원실료는 전입된 입원실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5조(제요금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2018.12.31. 규정489>

1. 의료원과 감면 계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제요금
2. 사회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제요금
3. 공공기관에서 직접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보험 공단 등에서 의료원에서 치료한 실적이 있는 환자의 진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제증명 수수료

제6조(진료촉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일반기업체의 장이 소속 직원의 진료비를 후납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촉탁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종결 후에 해당 기관장에게 제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3. 28. 규정 1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2. 6. 30. 규정 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항의 입원실료는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4. 6. 17. 규정 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7. 28. 규정 24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 12. 28. 규정 24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3. 28 규정 25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3. 26. 규정 26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8. 6. 26. 규정 2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 6. 16. 규정 29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0. 9. 7. 규정 30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9월 13일 안치상가부터 적용한다.

수가 규정

부 칙 <개정 2011. 2. 1. 규정 3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1년 2월 1일 분양실 사용 상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2. 9. 28. 규정 3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2. 12. 27. 규정 34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3. 4. 16. 규정 35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4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3. 7. 5. 규정 35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2. 12. 규정 45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2. 31. 규정 48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